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술장면 촬영요청 가능 사실 고지의무〉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32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7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u>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 4. (생략) ③ ~ ⑪ (생략)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그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¹⁾

이 조문은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대상으로 함.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사유²⁾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함.

2024년 8월 기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1)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촬영거부 사유:

-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수술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종별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현황 >

('24.8.13.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2,413	47	313	856	1,161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8	17	-	1	

자료: 보건복지부

< 시도별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현황 >

('24.8.13.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413	717	196	122	100	91	63	39	1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6	64	72	76	85	87	71	131	31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어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³⁾에서 의료기관이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고, 고지 방식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3)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 특히 현행법에서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술실 CCTV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실 CCTV로 촬영할 유인이 없음.
- 실제로 2023년 10월 70대 여성의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사건, 12월 8세 남아의 안과 수술 사망사건 등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해당 병원들은 수술실 CCTV 촬영가능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 고지 없이 안내문만 부착하였음.⁵⁾

이러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⁶⁾ 2025년 1월 채택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하나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치·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수술장면 촬영가능 사실’을 의료기관이 사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촬영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5) JTBC 2023.10.11. 보도 등

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주요감사실시내용(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사항) 중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어 수술실 CCTV 설치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현행법 제63조⁷⁾ 및 제90조⁸⁾에 따라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전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등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언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의료기관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우선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환자 등이 요청을 하면 촬영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조항 자체에 대하여 2023년 9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25년 2월 현재까지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그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7)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제4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8) 「의료법」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찬성)

- 대리수술, 성범죄 등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환자가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고지의 방법도 서면으로 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반대)

-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은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고지하고 있음에도, 더 광범위한 고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함과 동시에 위반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가능 사실을 직접 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태가 위독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수 분 수 초 단위로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개정안은 알리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의료기관 영상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에 반하는 측면도 있음.

3) 대한병원협회(반대)

□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따라 수술의사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촬영 가능사실 고지까지 강제한다면, 의료계가 우려한 부작용(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 불필요한 분쟁 증가 등)이 심화되어 외과계 고난이도 의료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 문제 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촬영 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임.

4) 대한치과의사협회(반대)

□ 수술실 CCTV 운영을 넘어, 환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행위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상태에 두어 수술행위에 대한 집중력 저하 및 과도한 긴장 유발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수술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 의료진의 방어적, 소극적 대처를 유발하여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환자에게 수술 전 촬영요청을 권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음.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보완 필요)

□ 현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하도록 되어 있어, 수술장면 촬영가능 사실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수술장면 촬영이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함.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 수술실 설치의 의무이지만 촬영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전고지 의무마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알 권리와 수술실 내부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 장면 촬영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